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「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」을 이행하고 양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(법률 제19553호, 2023. 7. 18. 공포, 2025. 7. 19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아동적응보고서 수령·확인·작성 기간 (안 제2조 및 제4조)

- 1) 외국으로의 입양 시 법 제16조제1항에서 입양국이 작성한 아동적응 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령하고 확인하게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
- 2) 국내로의 입양 시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신국과 협력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아동에 대해 정기적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적응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
- 3) 아동적응보고서를 수령·확인하고, 작성하여야 하는 기간을 입양이 성립된 날로부터 1년으로 정함

나.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을 위한 사후서비스사업의 내용(안 제3조)

- 1) 법 제16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
- 2) 사후서비스사업으로 입양가족 간 정보공유와 상호협력 지원, 모국 방문, 모국어연수, 국외로 입양된 아동이나 양부모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

다. 외국과의 협정 체결(안 제5조)

- 1) 법 제31조에 따라 입양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 시 협약 체결국 또는 비체약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
- 2) 협의방법에 관한 사항, 중앙당국의 권한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, 보고서 등의 송부 및 수령방법, 국제입양에 관한 부가적 요건이나 절차, 아동적응보고서 작성·송부 및 수령의 기한과 방법 등을 협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

라. 업무의 위탁기준(안 제6조)

- 1) 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 관련 업무 일부를 아동 권리보장원 또는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함에 따라, 위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
- 2) 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시설·인력 기준을 정함

마.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(안 제7조)

보건복지부장관, 아동권리보장원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업무를 위임·위탁받은 기관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건강·범죄경력,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국제입양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아동 적응보고서 수령·확인 기간) ① 「국제입양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6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외국으로의 입양이 성립된 날로부터 1년까지를 말한다.

제3조(사후서비스 사업) 법 제16조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
1. 입양가족 간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지원 사업
2. 모국방문사업
3. 모국어연수
4. 국외로 입양된 아동(성년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)이나 양부모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
5. 그 밖에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후서비스 사업

제4조(아동 적응보고서 작성 등 기간) 법 제24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국내로의 입양이 성립된 날로부터 1년까지를 말한다.

제5조(외국과의 양자 또는 다자 협정 체결)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중앙당국(협약 비체약국의 경우 권한있는 기관) 간 협의 방법에 관한 사항
2. 중앙당국의 권한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
3. 출신국 또는 입양국의 중앙당국이 작성한 보고서, 그 밖의 서류의 송부 및 수령 방법
4. 국제입양에 관한 부가적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
5. 아동 적응보고서의 작성·송부 및 수령의 기한과 방법
6.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업무의 위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각각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별표의 시설 기준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중에서 지정한 곳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아동 정보의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입력·관리
2.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신청 접수
3.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·가정환경 조사(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을 포함한다) 및 그에 대한 보고서 작성
4. 법 제24조에 따른 상담·복지서비스 지원 및 아동 적응보고서 작성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, 입양대상아동 및 예비양부모의 지역별 분포, 지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행할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.
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기관의 지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제7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보건복지부장관(법 제32조 및 영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, 아동권리보장원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(해당 권한이 위임·위탁된 경우 그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·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7조에 따른 국제입양대상아동 결정, 국제입양아동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무
2. 법 제8조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에 관한 사무
3. 법 제9조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 등 확인에 관한 사무
4. 법 제10조에 따른 결연에 관한 사무
5. 법 제11조에 따른 중앙당국 간 협의에 관한 사무
6. 법 제12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에 관한 사무
7. 법 제14조에 따른 입양의 효력발생에 관한 사무
8. 법 제15조에 따른 아동의 인도에 관한 사무
9. 법 제16조에 따른 사후서비스에 관한 사무

10. 법 제17조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에 관한 사무
11. 법 제18조에 따른 양자가 될 자격에 관한 사무
12. 법 제19조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 등에 관한 사무
13.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 신청 등에 관한 사무
14. 법 제21조에 따른 중앙당국 간 협의에 관한 사무
15. 법 제22조에 따른 출신국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발생에 관한 사무
16. 법 제23조에 따른 국내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발생에 관한 사무
17. 법 제24조에 따른 사후서비스에 관한 사무
18. 법 제25조에 따른 입양 취소에 관한 사무
19. 법 제26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무
20. 법 제27조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입력·관리에 관한 사무
21. 법 제28조에 따른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에 관한 사무
22. 법 제30조에 따른 협약준수입양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
23.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
24. 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무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위탁업무 수행 기관의 시설 기준 등 (제6조제1항 관련)

위탁업무 수행 기관의 시설 기준 등 (제6조제1항 관련)

1. 시설기준

가. 상담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용공간(상담실)을 갖추는 것

- 1) 상담받는 사람의 신분, 사생활 및 상담내용 등의 노출을 막기 위한 칸막이
- 2)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장비(녹취기, 카메라 등)

나. 책상, 전화기, 컴퓨터, 복사기 등 사무 처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 수 있을 것. 다만, 시설 내 다른 기관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.

2. 인력기준

가. 배치기준: 다음 자격기준을 갖춘 담당인력이 배치되어 있을 것

나. 자격기준

- 1)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부여할 수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「아동복지법 시행규칙」 별표 4에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- 2) 대학을 졸업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3년 이상 입양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,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아동·청소년·가족 관련 기관에서 해당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3) 「아동복지법」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- 4)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이 있는 사람
- 5)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413